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한 제도 도입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의 신병 확보 또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의 환수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등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된 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독립몰수제’의 도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의 주요 선진국과 더불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및 「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권고사항 등 부패범죄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독립몰수·추징 등 정의	「형법」상 몰수와 구별하여 별도의 독립몰수·추징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독립몰수·추징의 대상범죄	[주요 민생침해범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및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독립몰수·추징의 요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의 불특정(다만,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및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가능)
독립몰수·추징의 관할 법원	▲관련범죄(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 또는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독립몰수·추징의 재판 형식 및 불복 절차	법원은 결정으로써 몰수·추징명령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한 불복 가능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담당 부서	검찰국 국제형사과	책임자	과 장 이지연 (02-2110-3553)
		담당자	검 사 황익진 (02-2110-3554)